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71호 2020. 8. 27.(목)

훈 령

- 남해군 훈령 제335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예산집행심의회규정 등 일부개정 훈령 · 1
- 남해군 고시 제336호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 7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20-144호 남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교통시설(주차장-창선단항공영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3
- 남해군 고시 제2020-145호 남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5
- 남해군 고시 제2020-1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7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20-1047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18
- 남해군 공고 제2020-1050호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 남해군 공고 제2020-1061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37
- 남해군 공고 제2020-1064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39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4, 행정 3044)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35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예산집행심의회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예산집행심의회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을 발령한다.

2020년 8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예산집행심의회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1조(「남해군예산집행심의회규정」의 개정) 「남해군예산집행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 를 “직속기관” 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일상감사 규정」의 개정) 「남해군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업소 및 읍·면” 을 “읍·면”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남 해 군 공 보

(2) 제 671 호

2020년 8월 27일

제3조(「남해군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규정」의 개정) 「남해군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의 개정)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나목 중 “관련실·과·소의견”을 “관련부서 의견”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의 개정) 「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예 비 심 사			본 심 사		
	작성자	계표 및 검산자	담당관·과 ·소장	담당자	담 당 (팀장)	통 계 책임관

제6조(「남해군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의 개정) 「남해군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 상시로 배치되어 민원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정규직 공무원 ○ 민원봉사과 민원창구 공무원의 복무를 직접 감독 하는 담당
---	--

별표의 읍·면의 범위란 기호(○) 중 “생활민원담당”을 “민원담당”으로 한다.

제7조(「남해군 기록관 운영규정」의 개정) 「남해군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소, 전읍면”을 “전읍면”으로 한다.

제8조(「남해군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의 개정) 「남해군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소, 읍·면”을 “읍·면”으로 한다.

제9조(「남해군 민원업무처리 전결규정」의 개정) 「남해군 민원업무처리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담당관·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와”를 “담당관·과, 직속기관과”로,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0조(「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의 개정)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남해군민원사무착오및지연에대한보상규정」의 개정) 「남해군민원사무착오및지연에대한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2조(「남해군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의 개정) 「남해군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제13조(「남해군립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규정」의 개정) 「남해군립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청년혁신과장”으로 한다.

제14조(「남해군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의 개정) 「남해군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5조(「남해군어업지도선관리운영규정」의 개정) 「남해군어업지도선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제16조(「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의 개정)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7조(「남해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의 개정) 「남해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8조(「남해군 재난 예·경보 운영규정」의 개정) 「남해군 재난 예·경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각각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9조(「남해군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의 개정) 「남해군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본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호,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및 제19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각각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20조(「남해군건설공사관리규정」의 개정) 「남해군건설공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남해군설계심사위원회규정」의 개정) 「남해군설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경영혁신·환경녹지·문화관광·건설·해양수산과장”을 “재무·지역활성·환경녹지·문화관광·건설교통·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토목건설담당 또는 건축민원담당”을 “건설관리팀장 또는 건축민원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주관실과”를 “사업주관부서”로 한다.

제22조(「남해군읍면행정실적심사규정」의 개정) 「남해군읍면행정실적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훈령 제336호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2020년 8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남해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까지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 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사항인 경우

4.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현장면책 검토 요청 안내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될 경우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요청권자 : 감사대상기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2. 요청기간 : 감사 종료일 10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사항인 경우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의2 서식]

현장 적극행정면책 검토 신청서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감사 지적사항	
면책 심사 신청 사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사항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업무 책임자 의견	

※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사항인 경우	
감 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사항인 경우	
	총 합 의 견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144호

**남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교통시설(주차장-창선단항공영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 공고 제2020-532호(2020.04.14.)로 공람·공고된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16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교통시설(주차장-창선단항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19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 및 건설교통과(☎055-860-3454)에 비치]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교통시설-주차장(창선단항공영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주차장	창선면 대벽리 160 일원	18,280	증)3,139	21,419	남해군 고시 제2017-6호 (2017.01.25.)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주차장	구역변경 (증: 3,139㎡)	○ 지난 2017년 결정된 군계획시설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전 군관리계획(교통시설: 주차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남해군 고시 제2020 - 145호

**남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19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전기공급설비 (태양광발전시설)	삼동면 봉화리 산308-1	58,000	감) 397	57,603	2017.11.10. (남해군 고시 제2017-121호)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비고
1	전기공급설비 (태양광발전시설)	• 전기공급설비 면적축소 A=58,000m ² → A=57,603m ² (감 397m ²)	• 토지수용을 위하여 공유토지 (산356-1)의 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48	4	국지 도로	1,580	산366-8 소2-106	산308-1	일반도 로	전기공급 설비	2017.11.10. (남해군 고시 제2017-121호)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소로3-48	• 소로3-48 - L=1,580m, B=4m • 면적변경 - A=15,854m ² → A=15,793m ² (감 115m ²)	• 토지수용을 위하여 공유토지 산356-1의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산356-6으로 변경 반영.	

남해군 고시 제2020 - 1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하점*
3. 주 소 : 부산광역시 진구 월드컵대로
4. 점용목적 : 태양광 발전소 진입교량 건설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1번지 일원
6. 점용면적 : 영구점용 427㎡, 일시점용 1,233㎡
7. 최초허가일 : 2018. 2. 21.
8. 점용기간 : 2020. 8. 21. ~ 2022. 10. 3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1047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51호	패류양식 (바다식)	새꼬막	설천 진목	4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50	김민숙 외3 (김민녀,김영 숙,김태영)	제46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52호	어류등양식 (수하식)	우렁 챙이	삼동 동천	3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531번길 6	문태성 외 1명(김천수)	제47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53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38번길 43-11, 201호	김종범	제48호 재개발

남 해 군 공 보

2020년 8월 27일

제 671 호 (19)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54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20,7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425번길 24	김광수	제149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55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775번길 15	서홍민 외 1명(전연서)	제150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56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26-39	박선종 외 2명(이경철, 김억)	제151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57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4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505번길 20-6	박명숙 외 2명(박성준, 박진성)	제152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58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28,800	2020.08.21. 2030.08.20. (10년)	하동군 금남면 소송음달길 12	조재환	제156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59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28,800	2020.08.21. 2030.08.20. (10년)	설천면 설천로775번길 15	이은정 외 1명(장영남)	제157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60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금음	45,000	2020.08.23. 2030.08.22. (10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694-32	지호석 외 1명(하필영)	제158호 재개발

※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 해 군 공 보

(20) 제 671 호

2020년 8월 27일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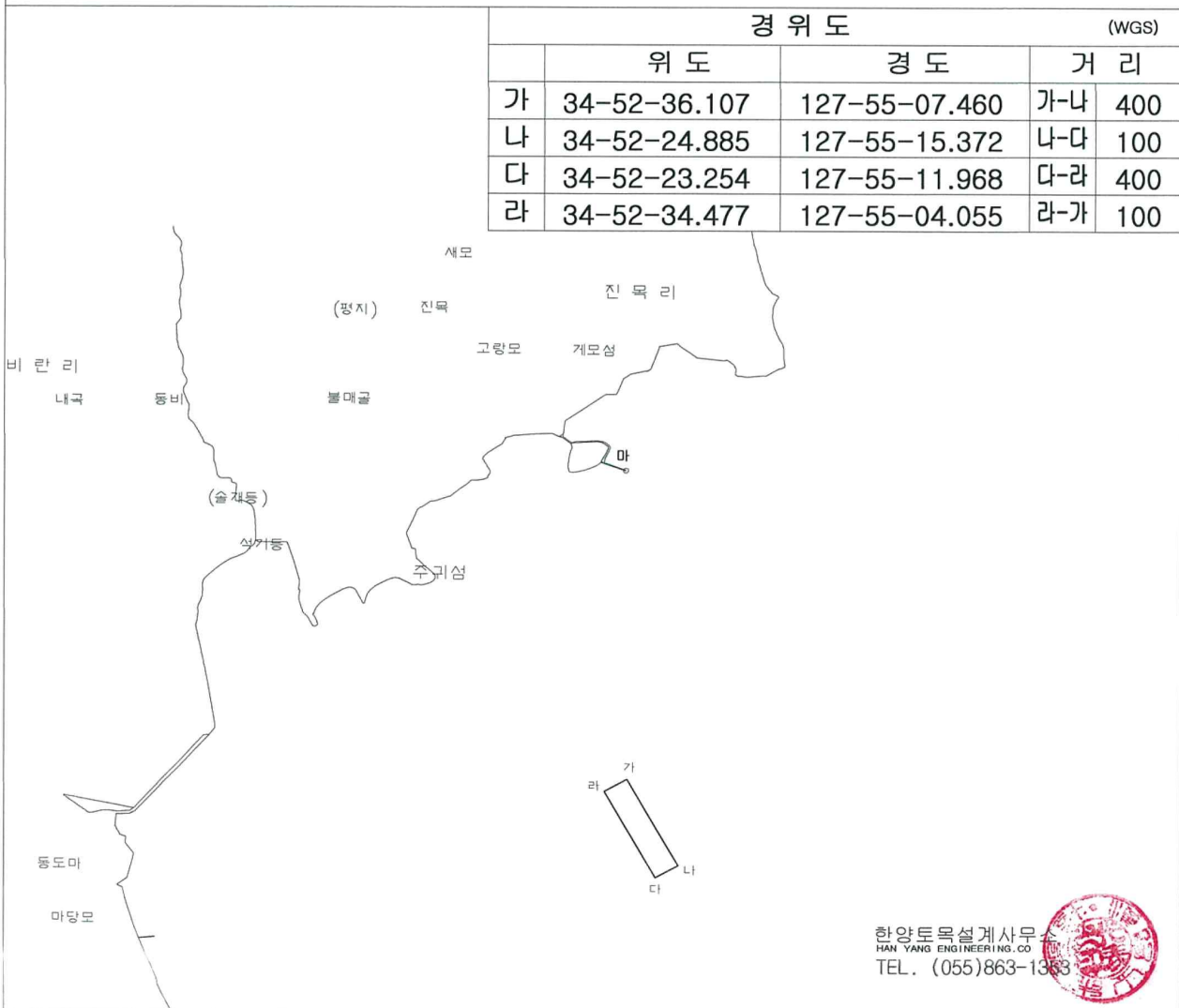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46호	패류양식 (바다식)	새꼬막	설천 진목	40,000	2010.08.21 2020.08.20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50	김민숙 외3 (김민녀,김영 숙,김태영)	
남해양식 제147호	어류등양식 (수하식)	우렁 쟁이	삼동 동천	3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531번길 6	문태성 외 1명(김천수)	
남해양식 제148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38번길 43-11, 201호	김중범	
남해양식 제149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20,7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425번길 24	김광수	
남해양식 제150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775번길 15	서홍민 외 1명(전연서)	
남해양식 제151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26-39	박선중 외 2명(이경철, 김억)	
남해양식 제152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40,000	2020.08.21. 2030.08.20. (10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505번길 20-6	박명숙 외 2명(박성준, 박진성)	
남해양식 제156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28,800	2020.08.21. 2030.08.20. (10년)	하동군 금남면 소송읍달길 12	조재환	
남해양식 제157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28,800	2020.08.21. 2030.08.20. (10년)	설천면 설천로775번길 15	이은정 외 1명(장영남)	
남해양식 제158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금음	45,000	2020.08.23. 2030.08.22. (10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694-32	지호석 외 1명(하필영)	

남해양식 제 551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34-53-16.40, E127-55-06.67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40,000 m²

축 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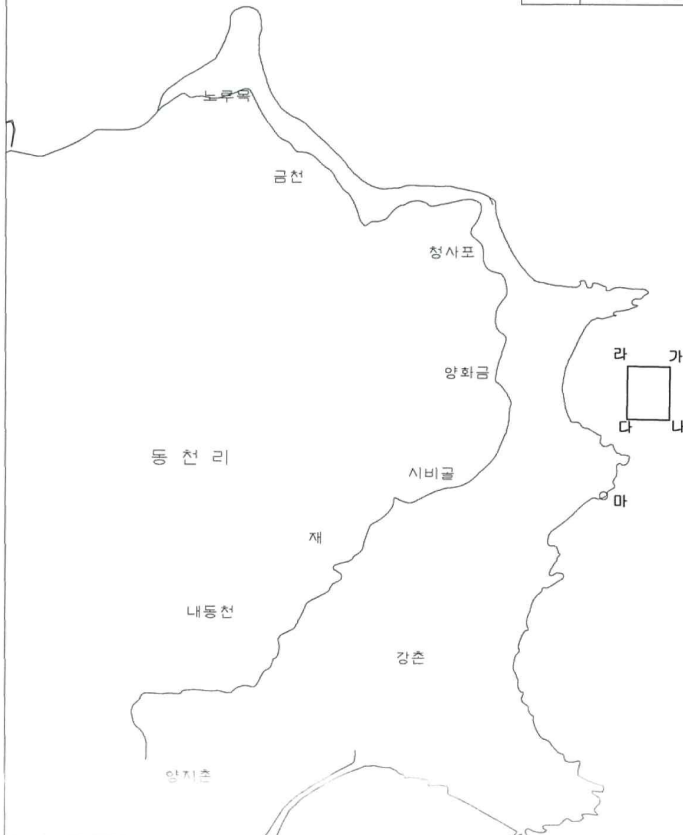
남해양식 제 552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어류 등 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N34-48-40.61, E128-03-53.34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 6. 면 적 : 3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48-56.510	128-04-02.378	가-나	200	
나	34-48-50.021	128-04-02.378	나-다	150	
다	34-48-50.021	128-03-56.477	다-라	200	
라	34-48-56.510	128-03-56.476	라-가	15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양식 제 **553**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60,000 m²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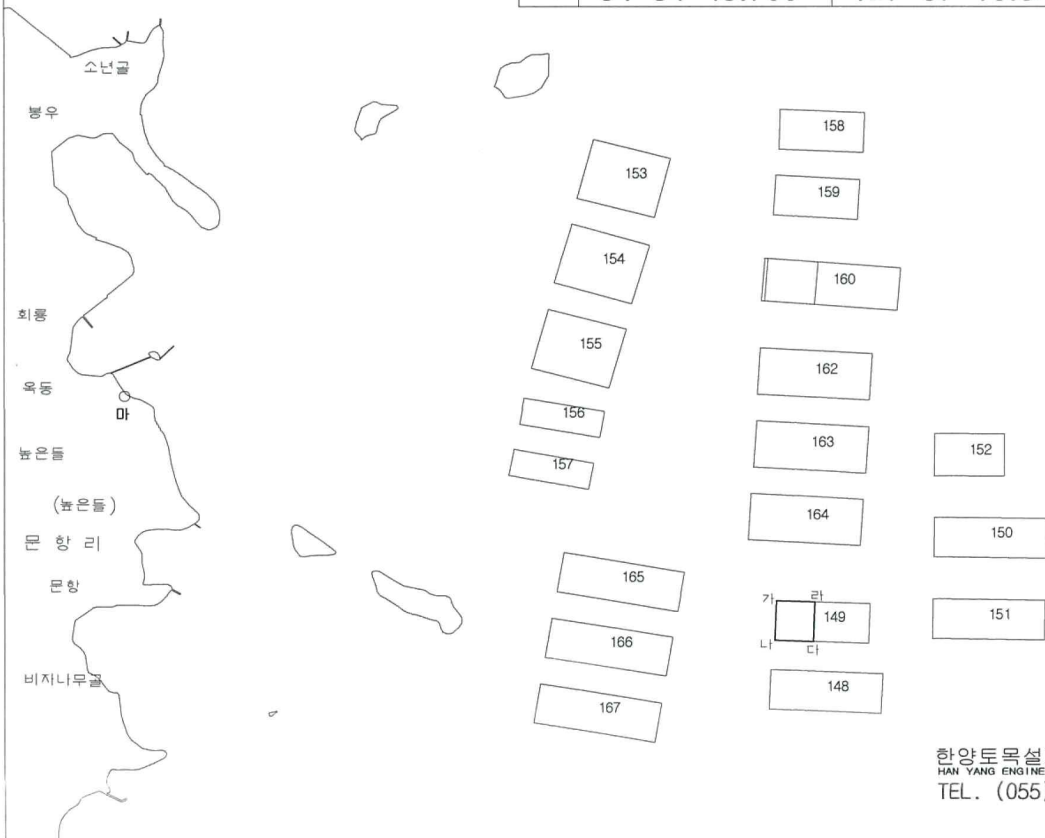
남해양식 제 554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N 34-55-08.05, E 127-55-35.91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 6. 면 적 : 20,7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4-43.804	127-57-08.088	가-나 150
나	34-54-38.939	127-57-07.950	나-다 138
다	34-54-38.835	127-57-13.385	다-라 150
라	34-54-43.700	127-57-13.522	라-가 138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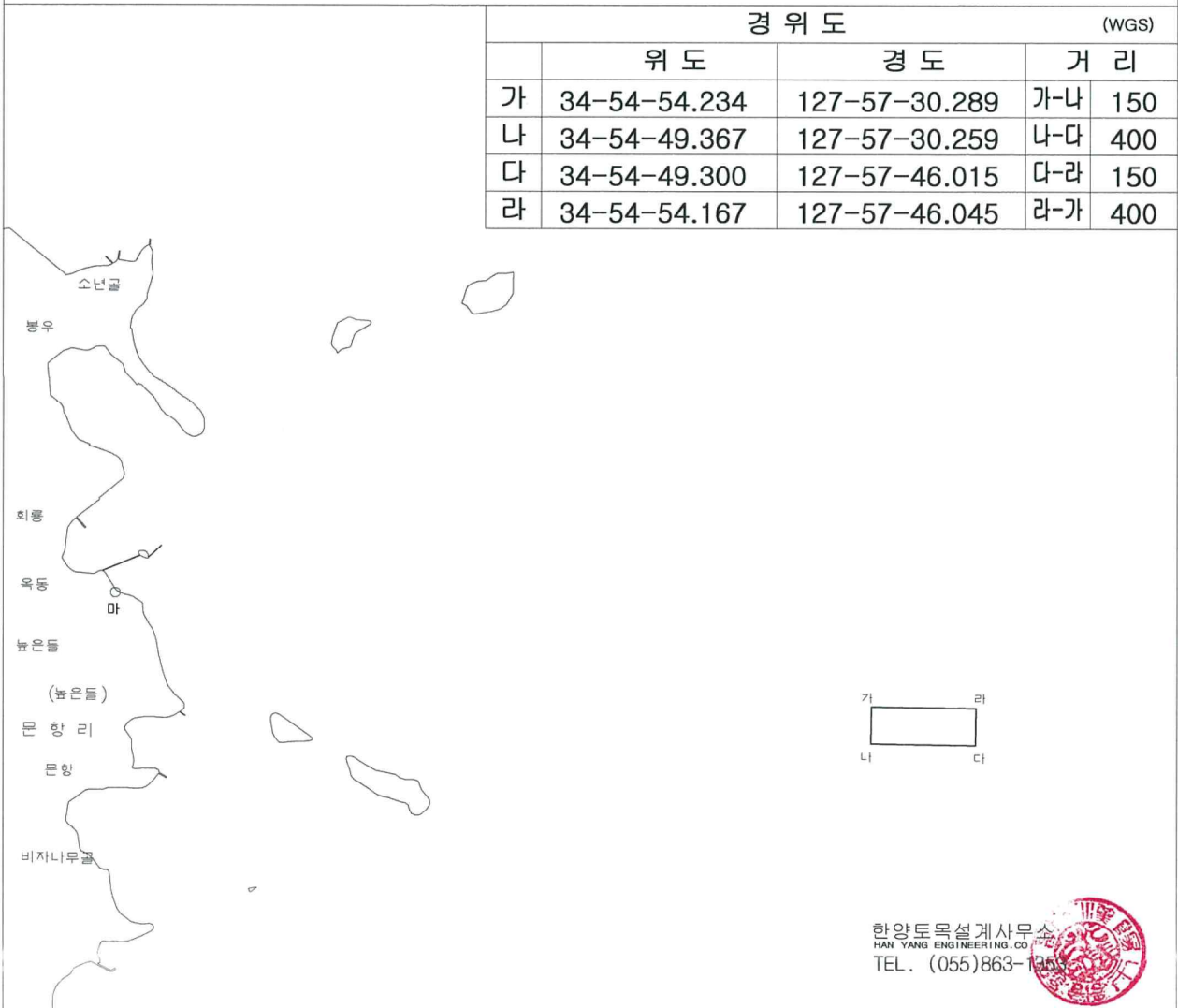


남해양식 제 555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60,000 m²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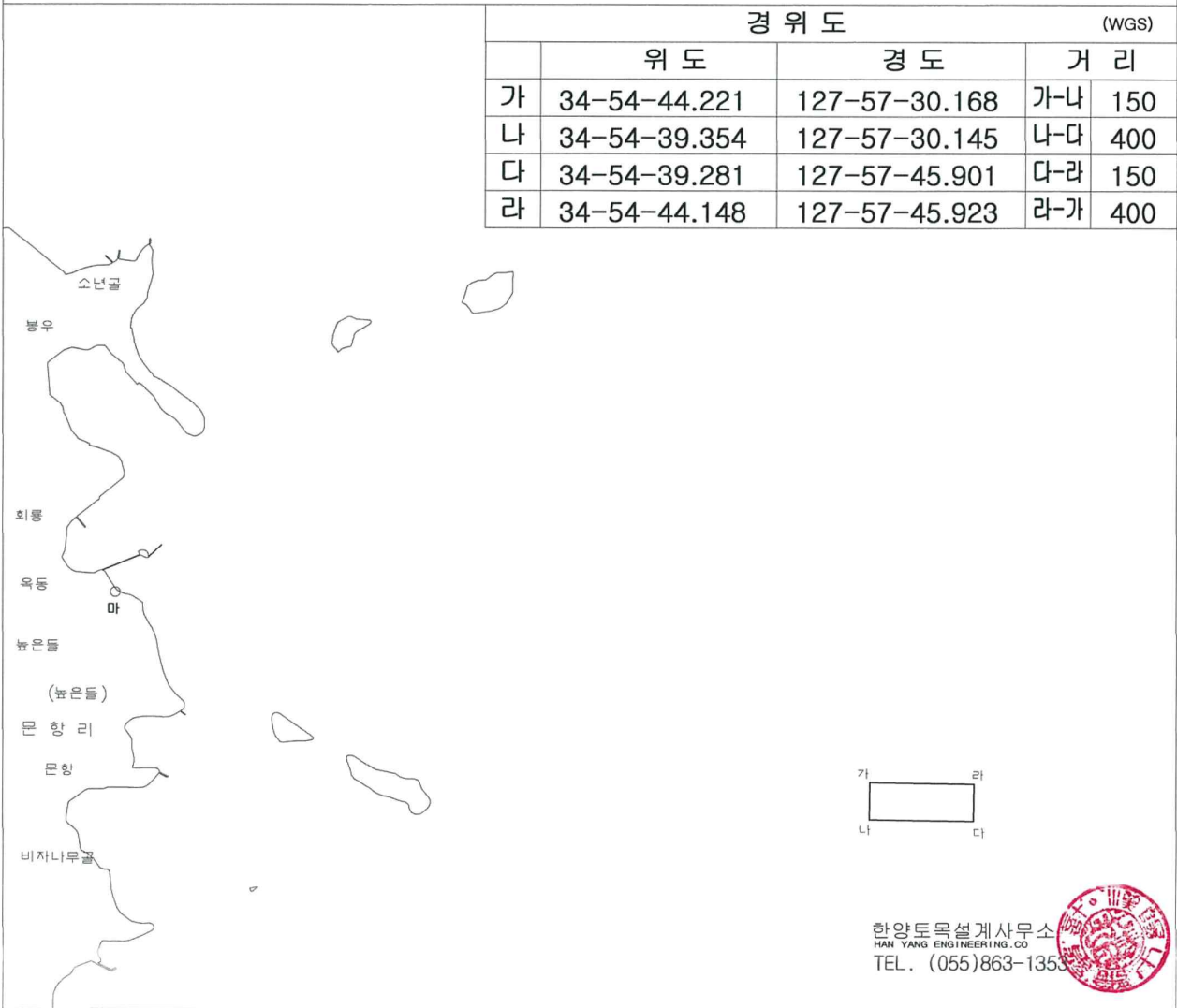


남해양식 제 556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60,000 m²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양식 제 551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 기 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40,000 m²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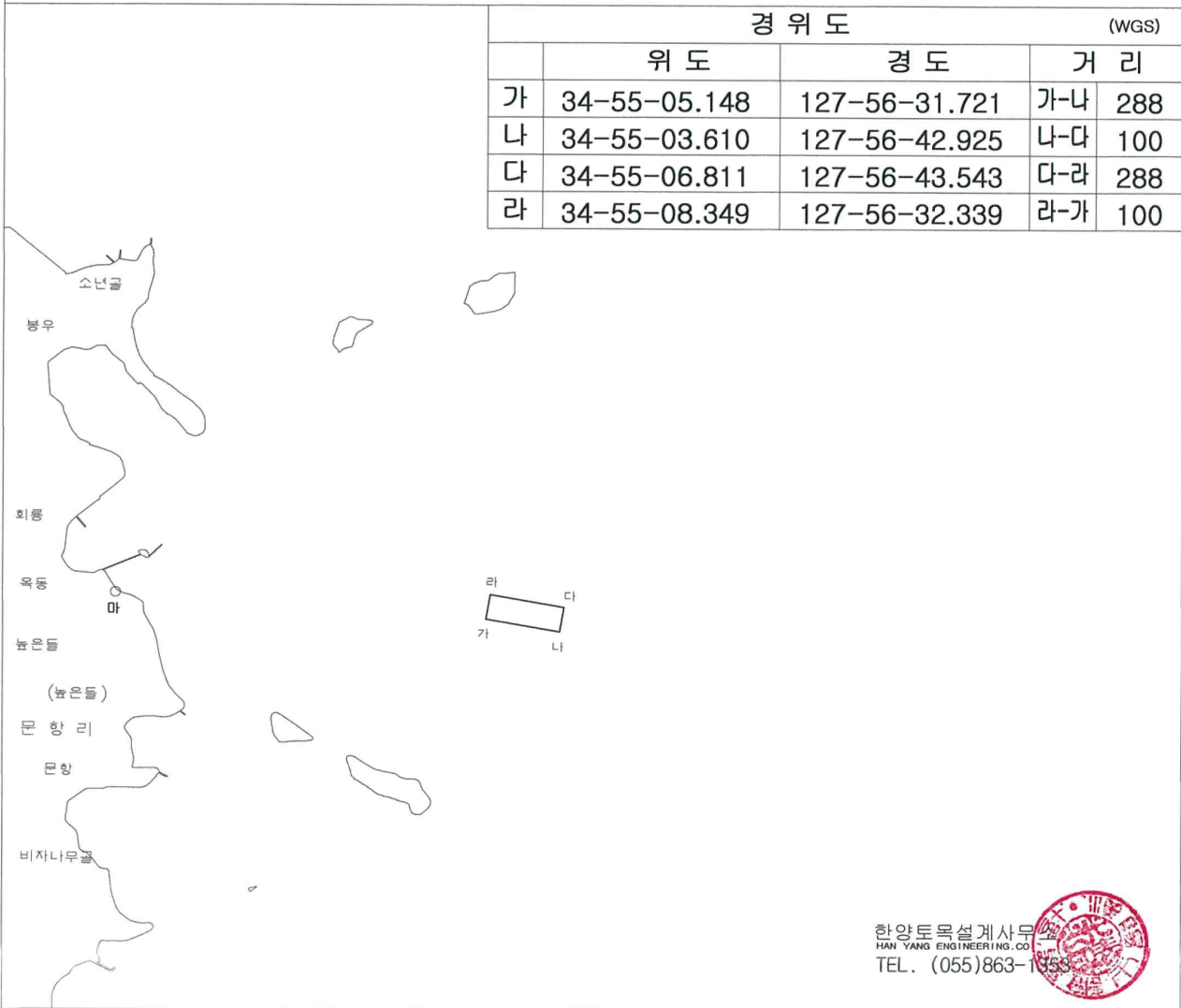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953

남해양식 제 558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N 34-55-08.05, E 127-55-35.91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 6. 면 적 : 28,800 m²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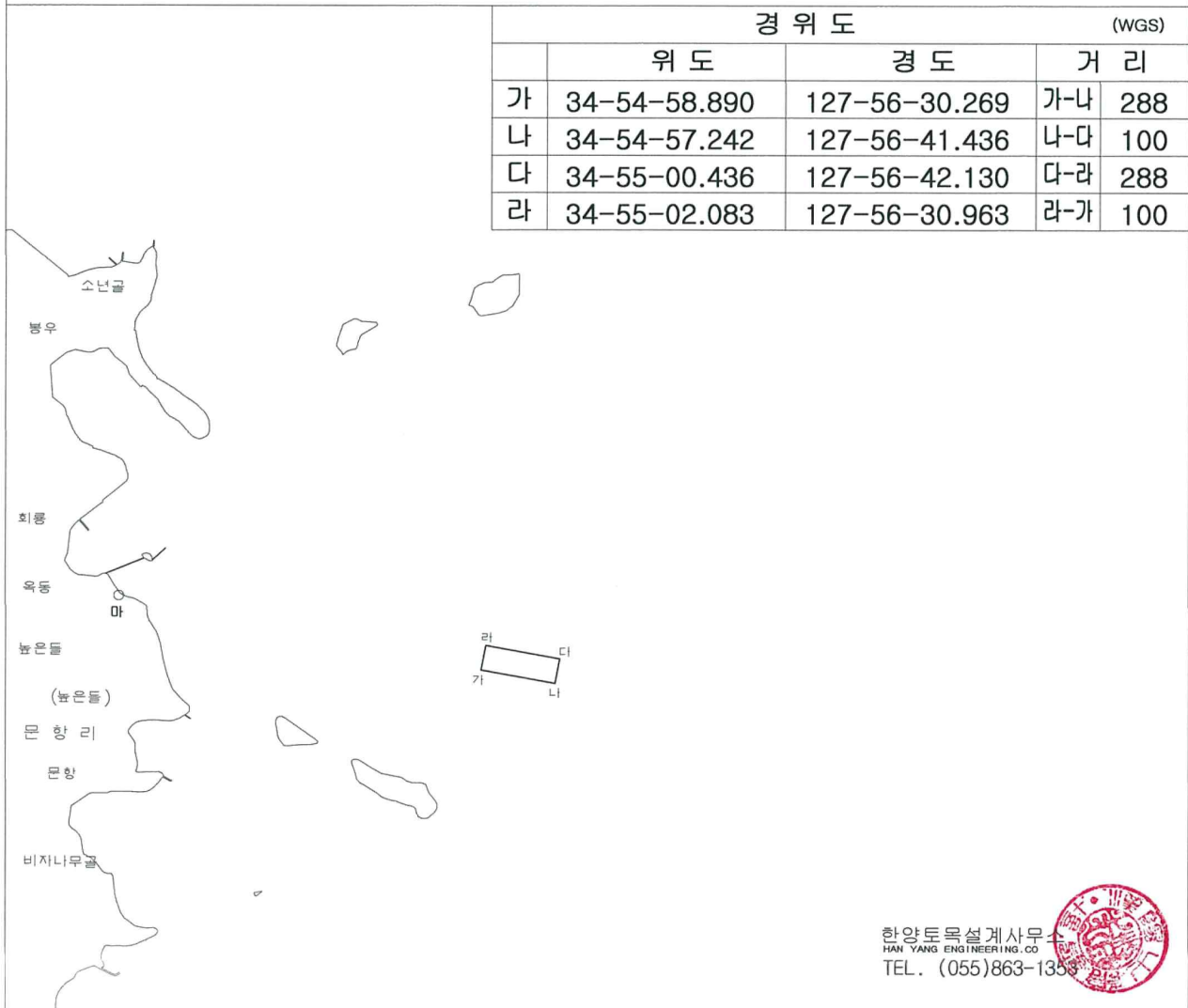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833

남해양식 제 559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8,800 m²

축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8

남해양식 제 560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45,000 m²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0 - 1050호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남 해 군 수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종전 공동위원장 규정에서 단독위원장으로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공동위원장 관련 내용이 남아있는 조문 개정(안 제4조)
- 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9일까지 남해군수(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udghkzzz@korea.kr

2)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3) 팩스 : 055-860-3703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전화 : 055-860- 30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아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1. 군수가 기존 규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규제의 존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	남해군	연번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 · 개정	제정일 :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추진일정	<준치 필요성>		
	○		
추진일정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를 대표하고----- -----.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
<신 설>	제4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군수가 기존 규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규제의 존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

현 행	개 정 안
	증하지 못할 경우 그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 ⑥ (생략)	제5조(회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061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61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30,400	2020.08.23. 2030.08.22. (10년)	경남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505번길 20-26	박성태	제60호 재개발

※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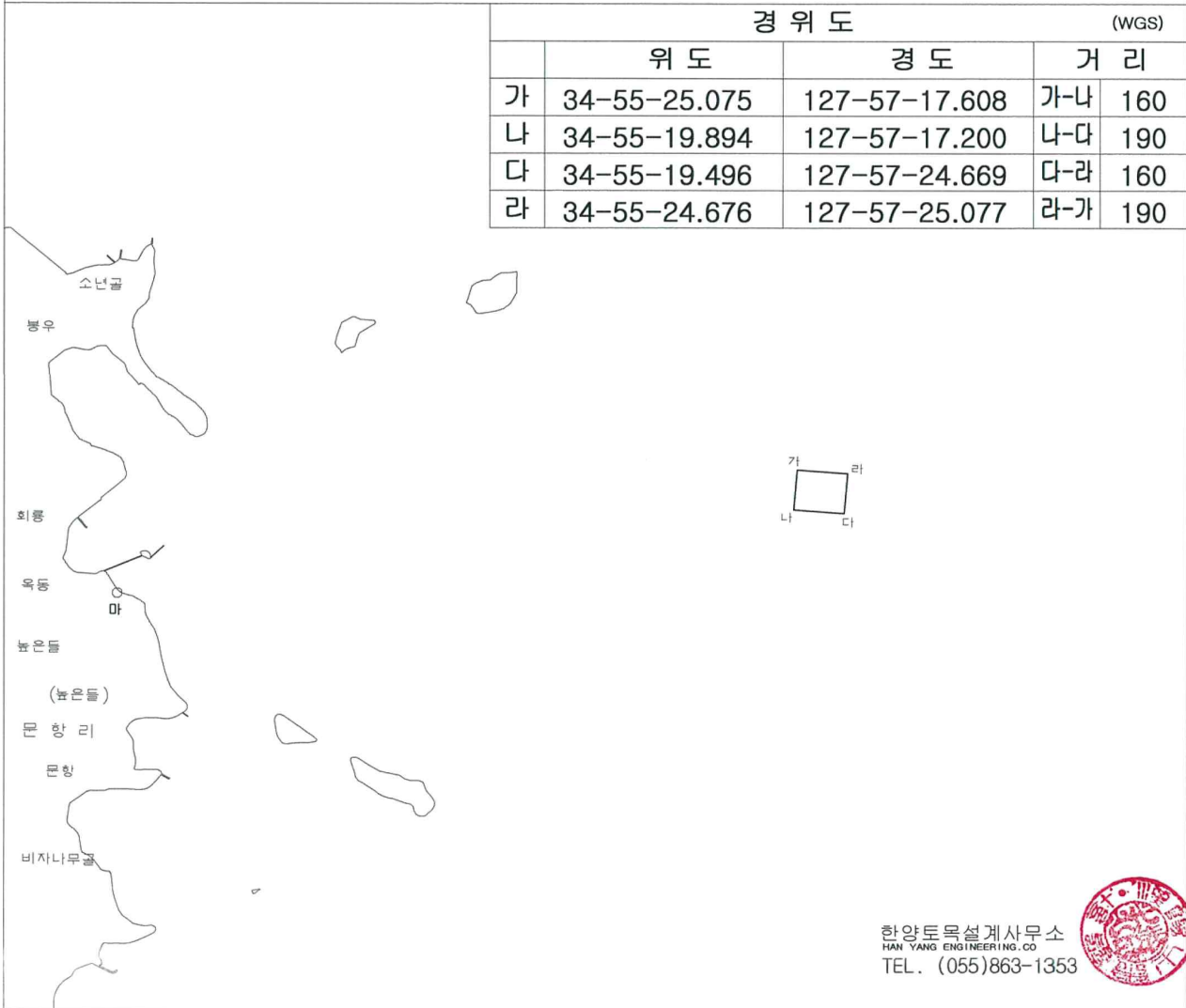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60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30,400	2020.08.23. 2030.08.22. (10년)	경남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505번길 20-26	박성태	

남해양식 제 561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30,400 m²

축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0 - 1064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 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제1호 “스카이워크 그네”를 추가하고 제2호 이용료 정의를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익스트림 스포츠시설과 설리 스카이워크로 하고 둘의 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정함

제6조(손해보험 가입)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문구 수정

제9조(운영 및 휴장)

“전망대 체험시설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

제10조(이용료)

시설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체험시설로 하고 [별표1]을 [별표]로 수정함

제11조(이용료 감면)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을 “전망대 체험시설” 로 문구 수정

제13조(이용의 제한·금지 등)

본문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을 “전망대 체험시설” 로 하고 제2호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 을 “고소공포증” 으로 제3호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을 “전망대 체험시설” 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9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73, 팩스 860-3739,
e-mail : n0820711@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전화 055-860-30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스카이워크”를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그네”로 하고 제2호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익스트림 스포츠시설과 설리 스카이워크(이하 “전망대 체험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망대 체험시설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중 “시설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체험시설”로,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한다.

제13조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제2호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을 “고소공포증”으로 제3호 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망대 체험시설(제9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호 관련)

1. 익스트림 스포츠시설(물미해안 전망대)

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인	소인
개 인	3,000	2,000
단 체	2,000	1,000

1) 소 인 :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2) 대 인 : 만19세 이상

3)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나. 운영시간 : 09:00 ~ 18:00

2. 설리 스카이워크

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인	소인	비고
스카이워크	2,000	1,000	
스카이워크 그네	6,000	4,000	스카이워크 포함

1) 소 인 :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2) 대 인 : 만19세 이상

나. 운영시간 : 09:00 ~ 21:00(스카이워크 그네는 18:00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란 바다조망을 목적으로 남해군에서 설치한 전망대로서 카페테리아, 판매장, 옥상전망대, 화장실 등 건축물 및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u>스카이워크</u>, 주차장, 데크 등이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p> <p>2. “이용료”란 <u>익스트림 스포츠시설</u>의 이용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6조(손해보험 가입) ① (생략)</p> <p>② 수탁자는 <u>익스트림 스포츠시설</u> 운영과 관련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스카이워크, 스카이어워크 그네, ----- -----.</p> <p>2. ----- 스포츠시설과 설리 스카이워크(이하 “전망대 체험시설”이라 한다)-----.</p> <p>제6조(손해보험 가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전망대 체험시설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운영 및 휴장) ① <u>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카이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u>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조(운영 및 휴장) ① 전망대 체험시설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용료) 전망대 <u>시설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u>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u>익스트림 스포츠 시설</u>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10조(이용료) ----- 체험시설----- ----- ----- 별표----- -----.</p> <p>제11조(이용료 감면) ① ----- ----- --- 전망대 체험시설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이용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망대 중 옥상전망대, <u>익스트림 스포츠시설</u>, 스카이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정신질환자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u></p> <p>3. 만7세 미만 : <u>익스트림 스포츠 시설</u>의 경우</p> <p>4. (생 략)</p>	<p>제13조(이용의 제한·금지 등) ----- ----- -----, 전망대 체험시설, ----- -----.</p> <p>1. (현행과 같음)</p> <p>2.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p> <p>3. ----- 전망대 체험시설----- -----</p> <p>4. (현행과 같음)</p>